

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84,174,603	17,525,238
일반회계	541,324,470	16,239,734
특별회계	42,850,133	1,285,504
기타특별회계	42,850,133	1,285,504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6,506,856	1,095,206
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	28,632	859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	874,748	26,242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139,289	34,179
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	13,154	395
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특별회계	4,287,454	128,624

제 2 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"과 같다.

제 3 조 201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총예비비는 4,351,994천원으로 그중 일반예비비는 2,300,000천원 이며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2,051,994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기본한도액은 11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